

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8서식] <신설 2020. 12. 10.>

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

※어두운 난(■)은 신고인(신청인)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
임대사업자	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
				(유선) (휴대전화)
민간임대주택	건물주소			
	주택구분	주택종류	주택유형	임대개시일
	[] 건설 [] 매입	[] 단기민간 [] 장기일반 [] 공공지원		
	민간임대주택에 있는 임대차계약 건수	관계되어 () 건		
동의자 (임차인)	호실/층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

본인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위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	년	월	일
동의자			
호실/층:			성명: (서명 또는 인)
호실/층:			성명: (서명 또는 인)
호실/층:			성명: (서명 또는 인)
호실/층:			성명: (서명 또는 인)
호실/층:			성명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시장·군수·구청장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"주택유형"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- 동일한 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(다가구주택 등) 모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, 민간임대주택에 관계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건수와 동의자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.
- 임차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로 합니다.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말소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.